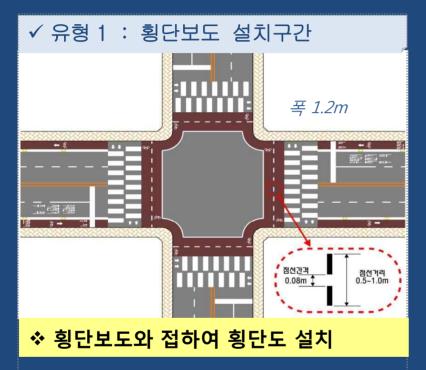
평면교차로 설치 기준



- 횡단도, 보행자 횡단도 순으로 설치
- 보행신호등 지시 따름
- ※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: 차도 우측가장자리를 주행하는 자전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횡단도 설치
- ※ 비정형 교차로의 경우 횡단도는 횡단보도와 접하지 않아도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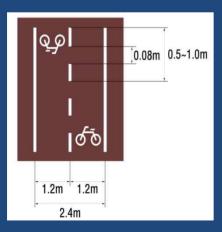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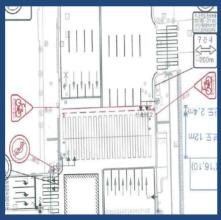


평면교차로 설치 기준

✓ 자전거 횡단도 설치 기준

- 위 치: 교차로, 진·출입로,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<u>횡단보도 측면</u>에 방향별로 횡단도 설치
- 폭 원: 1.2m이상, 백색 실선으로 차도와 구분, 양방은 가운데를 백색점선으로 구분
 - 백색점선 거리: 0.5~1.0m, 간격: 0.08m
- 생활권 내 속도가 낮은 도로구간에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는 <u>횡단도와 함께 고원식</u>으로 조성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 안전 확보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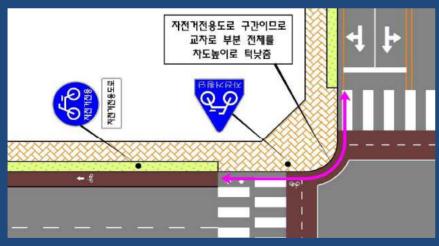


턱낮춤 설치 기준

✓ 자전거도로 턱 낮춤

※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 전체를 차도 높이로 턱낮춤 시공

- 횡단보도 및 자전거횡단도와 접속되는 지점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간 통행동선 구분위해 자전거 도로의 턱낮춤 시행
 - 자전거도로는 차도 취급, 자전거도로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 대기 않도록 시공
- 낮춰진 턱의 높이는 단차가 없도록(0mm) 해야 함
 - 상세 기준은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내용 참고
- 우천시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하여 포장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확보(BPN 기준 40이상)



<턱 낮춤 설치 예시도>





<턱 낮춤 설치 사례>

교통안전시설(안전표지) 설치 기준

※ 버스정류소 구간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설치

✓ 세부 설치 기준

• "자전거도로 유형별 설치" → 시인성과 자전거·보행자와 충돌이 고려된 높이로 설치

ᄉ쒸가ᄀ

- 보도상 및 생활권에서는 어린이(7~15km/h) 및 보행자(3~6km/h)의 통행속도, 시인성 고려
- 시종점, 교차로 등 구간에서 일반차량·자전거에게 정확한 정보제공*(안전표지+보조표지 ⇒ 이용지배력)*

❖ 설치 높이				
구분		기준	주의, 예고거리	
정주식	주의/규제	1.0-2.1m		
	지시/보조	1.0m 이상	25-50m	
내민식/문형식		4.5-5.0m		

· 열시 신석		
구 분	직선부	곡선부
자전거전용도로	50m	50m
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	50m	25~50m
자전거 전용차로	50m	25~50m
자전거 우선도로	50m	25m

❖ 설치 크기				
확대	1.3배, 1.6배, 2.0배			
축소	0.5배, 0.8배			
 ※ 확대·축소 가능, 단일노선에선 동일				

※ 전용차로는 주·정차 단속, 통행단속을 고려하여 설치간격 조정























[※] 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별표6 - 표지 별 규격이 나와 있음

[※] 도로연장, 도로형태, 길안내 또는 방향안내, 상충예고 등 내용을 보조표지에 표기하여 안전표지와 병행 설치

자전거주차시설 주요시설 기준

✓ 개념 및 유형

- •개념:도난예방을 위해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,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
- 종류: 자전거주차장, 자전거보관함, 자전거거치대

✓ 설치 기준

접근성. 이용편리성. 보관성 최우선 고려 ⇒ 불편하면 절대 이용하지 않음

- 훼손방지용 CCTV, 이용안내문, 위치안내도, 공기주입기, 주차시설 안전표지 <u>함께 설치</u>
 - <mark>이용안내문 :</mark> : 도난 및 방치에 관한 경고문구, 주차방법, 주행 시 보행자 및 어린이에 대한 양보 및 주의 등 에티켓, 도로교통법상 차로서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 반드시 기재
- 보도 위는 보행자 불편 고려, 유효보도폭 확보 (해외사례에서는 차도상 설치)
- 접근성 및 편의성 고려 ⇒ <u>주 출입구 인근</u>에 보행 및 차량과 상충이 없도록 설치
 - 이용목적지가 되는 지점에서 주차시설까지 보행거리가 길면 이용이 떨어짐
- 식수대, 화단 울타리, 도로 경계석, 흰색노면표시, 포장 ⇒ 주차공간 구분
- 주차시설과 함께 "방치 및 장기주차 자전거 보관장소"도 함께 설치

✓ 유형별 설치 기준

❖ 자전거주차장

- 대규모로 자전거보관 가능, 자전거 도난 및 파손 방지, 설치공간 필요
- 고장 등 유지·보수를 고려하여 무인기계식보다는 유인식이 바람직함
- 유인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사각지대 발생 없이 CCTV를 설치하여 도난 방지

❖ 자전거거치대

- 보도폭이 좁거나 보행불편이 우려되는 지점에는 사선(45°)형으로 배치
- <u>보행자와 상충방지</u>를 위해 주차영역 표시(흰색노면마킹 또는 포장시행 ⇒ 시인성 개선)
- 도난·훼손 방지를 위해 본체도 묶을수 있는 <u>프레임묶음형</u> 설치
-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반드시 CCTV 및 이용안내문 설치
 - ※ 기타 자전거 이용 비수기에도 다른용도로 활용가능한 다기능 디자인 거치대 등 설치









주차시설의 세부시설 설치예시

- 공기주입기, CCTV, 설치영역표시, 안전표지 등





<안전표지>

: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



<공기주입기> : 설치예시



<CCTV> : 설치예시



< 구차시설 설치공간 노면표시 > : 설치예시

주차시설의 세부시설 설치예시 -이용안내문, 위치안내도 등



- 자전거주차시설 식용시 주의사항-

- 10일 이상 장기주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강제처분하게 됩니다.
- 자전거 외 주차를 금지합니다(오토바이 주차금지, 물건도 놓지 마세요)
- 자전거가 분실 또는 파손 경우 책임을 지지 않으나, 관리에 유의하시고 잠금장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. (장금장치는 이중북음이 도난사고 방지에 더 효과적입니다.)
- 주차된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할 경우 형법 제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이 시설물은 CCTV가 설치되어 연중 24시간 작동합니다.

이용안내 문의: 교통행정과 자전거교통팀 [22 123 - 1234]

- 자전거 이용 시 에티켓과 안전수치 -

- 1 . 자전거는 차 (車) , 자전거타기는 운전 , 신호를 지켜요.
- 2.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요.
- 위험해요. 첫첫히 달려요.
- 4, 보행자와 어린이는 조심! 양보하세요,
- 5. 밤에는 전조등을 꼭 켜요.
- 6. 이어폰과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아요.

<이용안내문 - 예시 2>

자전거주차시설 위치 안내



- 현 위치 및 자전거주차시설 위치 확인 후 자전거는 전용 주차장소에 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주차시설 외에는 자전거 주차금지
- 2. 000은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24시간주차시설을 CCTV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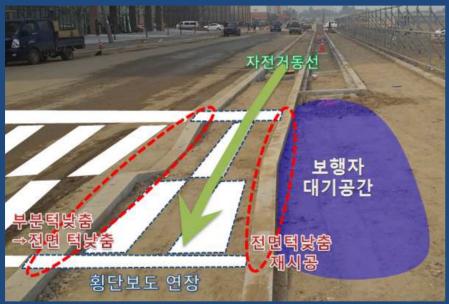
문의처: 000 - 0000 (

<이용안내문 - 예시 1>

<주차시설 위치 안내도- 예시 >

턱낮춤 및 횡단보도 개선 사례

✓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어 있을 경우







턱낮춤 및 횡단보도 개선 사례

✓ 자전거도로가 교차로에서 단절될 경우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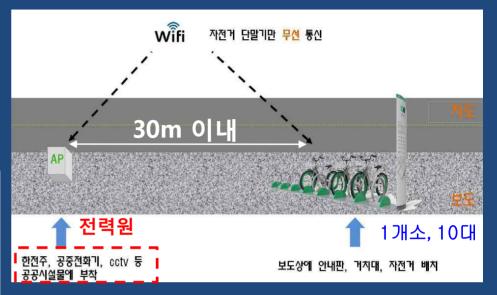




공공자전거 설치규격 -1개소, 10대 설치

✓ 거치대 세부규격 - 30m 이내 전력원 확보

항 목	규 격
일반사항	 서울시 공공자전거 단말기와 물리적/기술적으로 호환(체결/반납)이 가능하여야 한다. 단말기와 체결되는 연결장치는 자전거와 미체결시에는 거치대링안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며, 연결시 이용자가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연결장치가 자전거 연결의 필요이상으로 빠지지 않는 구조이여야 한다 야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혹한기와 혹서기에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.
번호판	 식별이 가능하도록 숫자로 표현된 거치대 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, 대여소별 수량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.
받침대	
거치링	・재질 : 냉간 압연파이프 ・두께 : 3.0t ・크기 : Φ600×Φ48.6
거치커버	 재질 LUPOY SC1004ML(강화플라스틱) 색상 PANTONE 7481C(초록), 7536C(회색) 크기 500x160 4x200



- 사용전력 : AC 220V
- 소비전력: 20W/h

